



마권 정보회사 고객명단 부정취득 및 허위사실유포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4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29부	사건번호	평성19년(와) 제28949호
판결 일자	2008. 7. 30.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주식회사 긴자샐러브레드 클럽		
피고	A, B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6항, 제 2조 1항 14호,		
영업 비밀	고객 명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경쟁, 허위정보		

02 사건 개요

원고는 마권 예상정보 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A와 피고 B는 원고의 대표가 운영하는 계열사의 종업원이었다. 피고 A와 피고 B는 해당 회사에 퇴사하며 각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A와 피고 B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고객 명단을 복사해 반출하여, 자신의 영업행위에 이용하였으며, 상기의 고객명단에 기재된 고객에게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전화로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정경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고객명단은 비밀로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영업에 있어서 유용한 영업비밀이다.

고객명단은 피고들이 각자 실행행위자로서 원고 소유의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것이다.

피고들은 영업시작 이후, “원고의 예상은 절대 맞지 않는다.” 등과같이 원고의 신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허위정보를 유포하였다.

해당 정보를 부정취득한 사실이 없다.

해당 고객명단은 독자적으로 입수한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를 부정한다.

04 판결 요지

고객명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관리성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는 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며,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지, 또한 그것을 위한 조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이 진술되어 있는 진술서는 원고 직원들에게 들은 소문이었고, 이를 확실하게 고지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들이 제작한 팸플릿에도 원고의 상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이외에 기타 경매정보 제공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만 추인될 뿐, 원고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식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부정경쟁법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05 Key Point

비밀의 유지를 위한 객관적이고도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 ‘영업비밀’로 인정되어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한 부정경쟁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와 식별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